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김선민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의원)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복무한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그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주된 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별 재정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역병의 봉급 인상속도를 고려하여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별 재정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출산크레딧 수혜자의 성별 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

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